

주주님께

제1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19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02월 28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8층(지타워)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2월 13일

주식회사 탐코미디어

대표이사 유정석 (직인생략)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가. 합병의 목적

(주)탑코미디어와 (주)탑툰의 합병은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1) 진행경과

일자	내용
2025년 1월 21일	합병당사회사 합병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서 체결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합병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통지

(2) 주요일정

구분		(주)탑코미디어 (합병회사)	(주)탑툰 (피합병회사)
합병 결정 이사회 결의일		2025-01-21	2025-01-21
합병계약일		2025-01-21	2025-01-21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통지		2025-01-21	-
주주확정기준일		2025-02-05	-
합병 반대이사 통지	시작일	2025-02-13	-
	종료일	2025-02-27	-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2025-02-28	2025-02-28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시작일	2025-02-28	-
	종료일	2025-03-20	-

구분		(주)탑코미디어 (합병회사)	(주)탑툰 (피합병회사)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통지		2025-02-28	2025-02-28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5-02-28	2025-02-28
	종료일	2025-03-31	2025-03-31
합병기일		2025-04-01	2025-04-01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2025-04-01	-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 등기 예정일)		2025-04-02	2025-04-02

주1) 합병(해산)등기예정일자는 합병(해산)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

주2) 공고는 각사 정관에 의거하여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계약서상 합병당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합병존속회사 (합병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탑코미디어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1701호(제이엔케이디지털타워)
	대표이사	유정석
	상장 여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소멸회사 (피합병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탑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8층(지타워)
	대표이사	현계진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방법

(주)탑코미디어가 (주)탑툰을 흡수합병합니다.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탑코미디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탑툰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탑코미디어

※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인 (주)탑툰의 총주주의 동의를 득하여 진행하는 간이합병입니다.

(3) 합병의 요령

① 신주의 배정

신주의 종류	보통주
신주의 수(주)	27,268,382주
신주배정기준일	합병기일(2025.04.01)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주)탑코미디어는 본 건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을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1) 합병신주 전체(27,268,382주)에 대해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②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탑코미디어는 합병등기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보통주)의 추가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2025년 04월 25일 추가 상장 예정입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합병신주(보통주)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25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교부금 등 지급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이외에 본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어떠한 교부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합병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⑤ 합병 등 소요 비용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까지 각 당사자 및 그 주주들에게 발생한 모든 세금 및 관련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⑥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승계

피합병법인(합병소멸회사)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법인(합병존속회사)이 승계합니다.

⑦ 고용관계의 승계

합병법인인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재직하는 근로자(등기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⑧ 합병의 선행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효력 소멸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탑코미디어(이하 "존속회사")
 주식회사 탑툰(이하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이하 "합병당사회사들")

제14조 선행조건

합병당사회사들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1.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체결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중요한 국내외 정부 승인, 인가 및 신고 절차("필요적 정부승인")가 완료되었을 것
3. 각 합병당사회사가 당사자인 주요 계약(그 위반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 또는 위험이 초래되는 계약 등)에 따라 요구되는 본건 합병에 관한 제3자의 사전 동의("필요적 동의")를 모두 취득할 것

제17조 계약의 해제

-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제7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각 합병당사회사는 필요적 정부승인 또는 필요적 동의가 거부된 경우 또는 각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체결과 본건 합병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합병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존속회사의 합병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금6,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5)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기일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2) 본 계약이 제17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본 계약이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⑨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소집공고 발송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합병법인(존속회사)인 (주)탑코미디어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의 임기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이후에도 상법 제527조의 4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남은 임기동안 (주)탑코미디어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현재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인 (주)탑툰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만료되어 기존 지위를 상실합니다.

⑩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⑪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대상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①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외부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개요

평가기관명 : 회계법인 리안

대표이사 : 이 상 은 (인)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9, 3층(반포동, 해성빌딩)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김 정 배 (인)

(전화번호) 02-592-5702

평가 계약일자 : 2024년 10월 23일

평가기간 : 2024년 12월 18일 ~ 2025년 1월 20일

② (합병가액과 합병 비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01.21(화)에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의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시가에 할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448	해당사항 없음
A. 기준시가	2,226	해당사항 없음
B. 할증율	9.9767735%	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 $[(Ax1+Bx1.5) \div 2.5]$ (주2)	해당사항 없음	66,753
A. 자산가치	1,638	3,457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08,951
마. 상대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바. 1주당 합병가액	2,448	66,753
사. 합병비율	1	27.2683824

주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으며, 합병당사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기준시가에 100분의 9.9767735의 할증을 적용한 가액입니다. 합병법인인 탑코미디어의 경우 기준시가에 할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할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탑툰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탑툰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Source : 합병당사회사 제시자료, 회계법인리안 분석)

③ 평가의 방법

합병가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평가기관이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주요가정, 산출내용, 기준시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01.21(화)에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의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 당사자간의 출자·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

① 당사회사 간의 출자내역

- (주)탑툰은 (주)탑코가 2024년 12월 31일 물적분할 기준일로 웹툰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규 법인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당사회사 간의 출자내역은 없습니다.
- 물적분할 전 (주)탑코가 최근 3개년 동안 (주)탑코미디어에 출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일자	계정과목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주)탑코	2022.12.23	자본금	982,961	3.4%	2,999,997
	2023.01.26	자본금	2,293,576	9.8%	6,999,994

② 당사회사 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당사회사 간의 매입·매출거래

(주)탑툰은 (주)탑코가 2024년 12월 31일 물적분할 기준일로 웹툰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규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매입·매출거래는 (주)탑툰의 웹툰 사업부문의 매입·매출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2022년은 물적분할 전 (주)탑코의 매입·매출거래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매출	매입	계
(주)탑코미디어	(주)탑툰	2024년	26,000	7,895,340	7,921,340
		2023년	-	6,635,744	6,635,744
		2022년	-	4,496,320	4,496,320

④ 영업상 채권·채무·미지급금·미수금

(주)탑툰은 (주)탑코가 2024년 12월 31일 물적분할 기준일로 웹툰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규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영업상 채권·채무·미지급금·미수금은 (주)탑툰의 웹툰 사업부문의 영업상 채권·채무·미지급금·미수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2022년은 물적분할 전 (주)탑코의 영업상 채권·채무·미지급금·미수금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 상대방	거래기간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미지급금	미수금	리스부채	계
(주)탑코 미디어	(주)탑툰	2024년	3,300	-	2,517,835	-	-	2,521,135
		2023년	-	-	2,096,214	-	119,216	2,215,430
		2022년	-	-	2,003,171	-	406,905	2,410,076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내용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존속회사인 (주)탑코미디어는 코스닥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합병존속회사 보통주식의 주식매수 제시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탑코미디어의 기명식 보통주 : 2,091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2025.01.21(화)에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의 본문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및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 1. 합병의 개요 -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 등

① 합병으로 인해 증가할 주식 종류와 수, 발행주식의 총 수 및 자본금

(단위 : 주, 원)

구분	합병 전	증감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22,025,767	27,268,382	49,294,149
액면가	500	500	500
자본금	11,012,883,500	13,634,191,000	24,647,074,500

② 합병 신주로 인한 최대주주의 지분율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탑코미디어와 (주)탑툰의 최대주주는 (주)탑코이며, 지분율은 각각 29.8%, 100.0%입니다. 합병 완료 시에도 (주)탑코미디어의 최대주주는 (주)탑코로 동일하며 합병 이후 최대주주의 예상지분율은 68.7%입니다.

(단위 : 주, %)

성명	관계	합병 전		증감		합병 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탑코	최대주주	6,572,713	29.8%	27,268,382	36.3	33,841,095	68.7%

주1) 합병신주 전체(27,268,382주)에 대해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③ 자기주식 이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존속회사의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디지털콘텐츠의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관한사업 2.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 3. 디지털 콘텐츠의 모바일 서비스 4.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임대업 5. 출판업 6. 만화, 소설 등 콘텐츠 제작, 유통, 판매업 7.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 유통, 판매업 8.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업 9. 아티스트 에이전시업 10.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 위 각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12. 위 각항에 관련된 중개 판매업 13.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디지털콘텐츠의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관한사업 2.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 3. 디지털 콘텐츠의 모바일 서비스 4.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임대업 5. 출판업 6. 만화, 소설 등 콘텐츠 제작, 유통, 판매업 7.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 유통, 판매업 8.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저작권 유통, 배포 10.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11. 경영진단 및 컨설팅업 12. 위 각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13. 위 각항에 관련된 중개 판매업 14.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및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항목의 순연

⑥ 합병으로 인한 이익배당 및 한도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⑦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⑧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탑코미디어는 본 소집공고 발송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⑨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합병법인 (주)탑코미디어는 일반합병이고, 피합병법인 (주)탑툰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⑩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⑪ 합병의 주요일정 중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라.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1) 합병회사

① 연결재무제표

(합병회사)

【주식회사 탑코미디어】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2023.12.31 현재

제 16기 2022.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유동자산	22,725,266,664	38,253,531,287
당좌자산	22,725,266,664	36,300,440,231
재고자산	-	1,953,091,056
비유동자산	19,145,584,958	20,614,362,758
유형자산	231,521,682	226,873,021
무형자산	16,539,000,000	18,526,000,000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사용권자산	802,010,612	1,434,001,189
기타비유동자산	1,573,052,664	427,488,548
자산총계	41,870,851,622	58,867,894,045
유동부채	4,411,840,996	22,942,383,286
비유동부채	227,193,751	778,794,343
부채총계	4,639,034,747	23,721,177,62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7,231,816,875	35,146,716,416
자본금	11,012,883,500	8,883,134,000
자본잉여금	41,823,942,577	29,139,840,740
자본조정	(1,457,950,560)	(798,391,7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0,523,884	54,481,740
이익잉여금(결손금)	(14,237,582,526)	(2,132,348,284)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37,231,816,875	35,146,716,416
자본과부채총계	41,870,851,622	58,867,894,045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1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수익(매출액)	19,178,342,271	11,703,036,733
매출총이익	19,178,342,271	11,703,036,733
판매비와관리비	21,831,392,637	10,300,585,658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영업이익(손실)	(2,653,050,366)	1,402,451,075
기타수익	255,084,804	34,218,123
기타비용	8,880,660	20,935,054
금융수익	597,576,919	330,260,146
금융원가	1,017,914,123	3,801,235,90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827,183,426)	(2,055,241,611)
법인세비용	1,510,792,276	-
계속영업순이익(손실)	(4,337,975,702)	(2,055,241,611)
중단영업순이익(손실)	(7,527,244,940)	(973,717,057)
당기순이익(손실)	(11,865,220,642)	(3,028,958,66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865,220,642)	(3,028,958,668)
비지배지분	-	-
기타포괄손익	(203,971,456)	73,212,217
총포괄손익	(12,069,192,098)	(2,955,746,451)
주당손익	-	-
계속영업기본및희석주당손실 (단위 : 원)	(212)	(158)
중단영업기본및희석주당손실 (단위 : 원)	(368)	(75)

② 별도재무제표

(합병회사)

【주식회사 탑코미디어】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2023.12.31 현재

제 16기 2022.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유동자산	21,048,778,519	37,662,866,115
당좌자산	21,048,778,519	35,709,775,059
재고자산	-	1,953,091,056
비유동자산	18,369,930,968	19,439,383,309
유형자산	103,104,561	52,385,348
무형자산	16,539,000,000	18,526,000,000
사용권자산	480,567,051	757,290,333
기타비유동자산	1,247,259,356	103,707,628
자산총계	39,418,709,487	57,102,249,424
유동부채	2,328,857,981	21,063,612,813
비유동부채	95,688,325	345,630,299
부채총계	2,424,546,306	21,409,243,112
자본금	11,012,883,500	8,883,134,000
자본잉여금	41,823,942,577	29,139,840,740
자본조정	(1,457,950,560)	(798,391,780)
이익잉여금(결손금)	(14,384,712,336)	(1,531,576,648)
자본총계	36,994,163,181	35,693,006,312
자본과부채총계	39,418,709,487	57,102,249,424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제 1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수익(매출액)	14,837,717,417	11,241,573,745
매출총이익	14,837,717,417	11,241,573,745
판매비와관리비	11,732,998,776	7,275,954,560
영업이익(손실)	3,104,718,641	3,965,619,185
기타수익	182,650,442	11,002,292
기타비용	3,660,571,810	1,924,232,601
금융수익	553,761,596	315,293,973
금융원가	935,000,912	3,727,442,224
지분법손익	(2,838,450,000)	(94,710,6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592,892,043)	(1,454,469,975)
법인세비용	1,492,985,105	-
계속영업순이익(손실)	(5,085,877,148)	(1,454,469,975)
중단영업순이익(손실)	(7,527,244,940)	(973,717,057)
당기순이익(손실)	(12,613,122,088)	(2,428,187,032)
기타포괄손익	(240,013,600)	18,730,477
총포괄손익	(12,853,135,688)	(2,409,456,555)
주당손익		
계속영업기본및희석주당손실 (단위 : 원)	(249)	(112)
중단영업기본및희석주당손실 (단위 : 원)	(368)	(75)

(2) 피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탐툰】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2024.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2024년
유동자산	10,273,084,746
당좌자산	10,273,084,746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23,899,968,004
투자자산	1,023,013,191
유형자산	1,006,643,477
무형자산	17,416,578,418
사용권자산	2,152,311,551
기타비유동자산	2,301,421,367
자산총계	34,173,052,750
유동부채	25,243,973,195
비유동부채	5,429,726,914
부채총계	30,673,700,109
자본금	500,000,000
자본잉여금	3,392,969,626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393,616,985)
자본총계	3,499,352,641
자본과부채총계	34,173,052,750

주1) (주)탑툰은 (주)탑코가 2024년 12월 31일 물적분할 기준일로 웹툰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규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재무제표는 (주)탑툰의 웹툰사업부문 분할 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2024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2024.12.31 기준

(단위 : 원)

과목	2024.12.31
영업수익	55,621,095,111
영업비용	47,147,861,395
영업이익(손실)	8,473,233,716
기타수익	3,532,127
기타비용	1,985,934,450
금융수익	394,643,139
금융비용	1,270,862,762
지분법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614,611,770
법인세비용	(242,751,593)
당기순이익(손실)	5,857,363,363
기타포괄손익	(260,700,447)
총포괄이익(손실)	5,596,662,916

주1) (주)탑툰은 (주)탑코가 2024년 12월 31일 물적분할 기준일로 웹툰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규 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재무제표는 (주)탑툰의 웹툰사업부문 분할 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2024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주)탑툰은 (주)탑코가 2024년 12월 31일을 물적분할 기준일로 하여 설립한 신설 법인으로 2023년말, 2022년말 재무정보가 없습니다.

분할시기	2024년 12월 31일
분할대상회사	(주)탑코
분할방법	물적분할
분할 주요내용	사업 역량의 집중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신설하고,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존속부문에 집중하여 발전하고자 한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번 분할로 웹툰 관련 플랫폼, 유통, 해외 매출 부문이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며, 이에 따라 신설 법인의 재무제표에 이전된 자산과 부채가 반영됩니다.
관련 공시서류	공시의무 대상회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